



Guarantee for customs and excise activities ^{P1}

Exemption from import duty and/or non-collection of import tax on the import of goods for geothermal activities ^{P3}

관세 및 소비세 활동에 대한 보증

2022년 11월 22일 재무부 장관은 관세 및 소비세 활동에 대한 보증(Jamiana) 요건을 개정하기 위하여 재무부 규정 No.PMK-168¹을 발표하였습니다. PMK-168은 기존의 PMK-68² and PMK-259³를 폐지 및 간소화 하며, 일부 신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.

보증은 관세 및 소비세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징수의 납부와 기타 의무를 이행에 대한 보증으로 정의됩니다.

관세와 소비세의 주요한 국가 징수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:

- | | |
|---|--|
| 1) import duty; | 8) export duty; |
| 2) anti-dumping import duty; | 9) export duty administration fines; |
| 3) return duty; | 10) export duty interest; |
| 4) import duty safeguard measures; | 11) other customs revenue; |
| 5) retaliatory duty; | 12) tobacco product excise; |
| 6) import duty in the context of ease of imports for the production of goods to be fully exported (<i>Kemudahan Impor Tujuan Ekspor</i>); | 13) ethyl alcohol excise duty; |
| 7) customs administration fines; | 14) excise duty on beverages containing ethyl alcohol; |
| | 15) excise administration fines; and |
| | 16) other excise revenue. |

기타 국가 징수는 수입세, 즉, 부가세(VAT), Article 22 수입세, 사치세(LST) 및 관세(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, DGCE)으로 부터 징수되는 기타 국가 징수로 구성됩니다.

보증은 행정 벌과금을 포함하여 보증금이 지급된 국가 징수의 납부의 채무불이행의 정산을 위하여 사용됩니다.

¹ MoF Regulation No.168/PMK.04/2022 (PMK-168) dated 22 November 2022 and effective from 1 January 2023

² MoF Regulation No.68/PMK.04/2009 (PMK-68) dated 8 April 2009 and effective from 7 June 2009

³ MoF Regulation No.259/PMK.04/2010 (PMK-259) dated 31 December 2010 and effective from 30 January 2011

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PMK-168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보증의 종류

신규 규정은 기존 재무부 규정에서 정한 보증의 종류에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:

- a) 현금 보증;
- b) 은행 보증;
- c) 보험회사를 통한 보증;
- d) 인도네시아 수출금융기관(Indonesian Export Financing Agency)을 통한 보증;
- e) 보증인 기관을 통한 보증;
- f) 회사 보증;
- g) 서면 보증;
- h) 유형자산 보증- *new*;
- i) 기타 보증- *new*.

상기 a)에서 g)까지의 보증은 기존 규정에서 정한 바와 유사하나, 회사보증 및 서면보증은 신규 규정에서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.

신규 유형자산 보증

동 보증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통한 보증이며, 회사의 경영진은 소유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. 유형자산 보증의 최대 보증금액은 보증 대상 유형자산의 세무상 판매가치 (*nilai jual objek pajak, NJOP*)에 해당합니다.

기타 보증

동 항목은 상기의 a)에서 h)까지에 언급된 것 이외의 보증을 포함하며, 다음을 포함하는 관세 및 소비세 활동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:

- a) 외국 관광선의 임시 수입(선박신고);
- b) 국경을 넘나드는 통제소를 통한 자동차 임시 수입(차량신고);
- c) 카넷(carnet)서류를 통한 임시 수입

행정 절차 및 경과 규정

보증 이용 신청, 보증서 수령증 발급, 보증 조정 신청 등은 DGCE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됩니다. DGCE Portal 을 아직 사용할 수 없거나 운영 중단이 발생한 경우 수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:

- a)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수령한 1회용 보증은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;
- b)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보증은 새로운 보증이 발행될 때까지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;

- c)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기업 보증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장관령을 획득한 기업 보증은 취소될 때까지 해당 장관령에 명시된 활동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지열 활동을 위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세 미징수 및 수입관세의 면제

2022년 11월 23일 재무부 장관은 지열 활동을 위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세 미징수 및 수입관세의 면제에 대한 기존규정 PMK-218⁴을 개정하기 위하여 재무부 규정 No.PMK-172⁵을 발표하였습니다. 동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유효합니다.

부가세/사치세, Article 22 수입세의 미징수 및 수입관세의 면제는 지열 활동의 운영을 위한 재화의 수입에 혜택에 부여됩니다.

수입관세 면제는 다음에 부여됩니다:

- 공동 운영 계약자 (*Kontraktor Kontrak Operasi Bersama*);
- 아래와 같은 사업체:
 - 지열 자원 컨세션 보유자;
 - 지열 자원 컨세션 허가증 소유자;
 - 지열 허가증 소유자;
 - 예비조사 및 탐사 임무의 수행자(*Penugasan Survei Pendahuluan dan Eksplorasi/PSPE*), PSPE는 예비조사 및 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 광물 자원부가 부여한 과업으로 정의됨;
 - 탐사 지원 업무의 수행자(*Penugasan Dukungan Eksplorasi*), 탐사 지원(즉, 지열 데이터와 작업 구역의 준비 및 입찰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제공되는 지열 개발 지원)을 제공하고 이행하기 위한 특별 과업으로 정의됨. - *new*;
- 부처/기관(즉, 지열 활동을 수행하는 주 부처 또는 비부처 정부 기관) 또는 지방 정부(즉, 지사, 시장 및 지방 정부 행정의 요소로서의 지역 기관) - *new*;
- 대학(즉, 고등 교육을 조직하는 교육 단위) - *new*;
- 연구 기관(즉, 지열 에너지 분야에 있는 연구 개발을 조직하는 기관) - *new*.

위 당사자에게 공급될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물품 수입에 대해서도 동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⁴ MoF Regulation No.218/PMK.04/2019 (PMK-218) dated 31 December 2019 and effective from 29 February 2020

⁵ MoF Regulation No.172/PMK.04/2022 (PMK-172) dated 23 November 2022 and effective from 23 December 2022

수입 관세 면제는 MoF Decree 의 발행을 통해 부여됩니다. 기존에는 수입품의 통관항을 담당하는 세관이나 인적 오류(예: 계산 착오 또는 오타)로 인한 실수에 대해서만 수입 실현 이전에 MoF Decree 를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. 현행 PMK-172 는 재화의 수량 및/또는 종류에 대한 수정을 허용합니다.

또한, 기존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가 면제된 수입재화는 수입통관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일부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었습니다. PMK-172 는 재화가 국유 재산으로 이전되는 예외 사항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

경과규정

2022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23일 이전에 발행된 탐사 지원 업무 서한은 만료일까지 지열 작업을 위한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및/또는 수입세 미징수를 부여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
Your PwC Indonesia Contacts:

Abdullah Azis
abdullah.azis@pwc.com

Hasan Chandra
hasan.chandra@pwc.com

Runi Tusita
runi.tusita@pwc.com

Adi Poernomo
adi.poernomo@pwc.com

Hendra Lie
hendra.lie@pwc.com

Ryuji Sugawara
ryuji.sugawara@pwc.com

Adi Pratikto
adi.pratikto@pwc.com

Hisni Jesica
hisni.jesica@pwc.com

Soeryo Adjie
soeryo.adjie-c@pwc.com

Adrian Hanif
adrian.hanif@pwc.com

Hyang Augustiana
hyang.augustiana@pwc.com

Sujadi Lee
sujadi.lee@pwc.com

Alexander Lukito
alexander.lukito@pwc.com

Kianwei Chong
kianwei.chong@pwc.com

Sukma Alam
sukma.alam-c@pwc.com

Ali Widodo
ali.widodo@pwc.com

Lukman Budiman
lukman.budiman@pwc.com

Surendro Supriyadi
surendro.supriyadi-c@pwc.com

Andrias Hendrik
andrias.hendrik@pwc.com

Made Natawidnyana
made.natawidnyana@pwc.com

Susetiyo Putranto
susetiyo.putranto@pwc.com

Anton Manik
anton.a.manik@pwc.com

Mardianto
mardianto.mardianto@pwc.com

Sutrisno Ali
sutrisno.ali-c@pwc.com

Antonius Sanyojaya
antonius.sanyojaya@pwc.com

Margie Margaret
margie.margaret@pwc.com

Suyanti Halim
suyanti.halim@pwc.com

Avinash Rao
a.rao@pwc.com

Marlina Kamal
marlina.kamal@pwc.com

Tim Watson
tim.robert.watson@pwc.com

Ay Tjhing Phan
ay.tjhing.phan@pwc.com

Nicholas Sugito
nicholas.sugito@pwc.com

Tjen She Siung
tjen.she.siung@pwc.com

Brian Arnold
brian.arnold@pwc.com

Nikolas Handradjid
nikolas.handradjid@pwc.com

Turino Suyatman
turino.suyatman@pwc.com

Dexter Pagayonan
dexter.pagayonan@pwc.com

Oki Octabiyanto
oki.octabiyanto@pwc.com

William Christopher
william.christopher@pwc.com

Enna Budiman
enna.budiman@pwc.com

Omar Abdulkadir
omar.abdulkadir@pwc.com

Yessy Anggraini
yessy.anggraini@pwc.com

Esa Perdana
esa.perdana@pwc.com

Otto Sumaryoto
otto.sumaryoto@pwc.com

Yuliana Kurniadjaja
yuliana.kurniadjaja@pwc.com

Gadis Nurhidayah
gadis.nurhidayah@pwc.com

Peter Hohtoulas
peter.hohtoulas@pwc.com

Yunita Wahadaniah
yunita.wahadaniah@pwc.com

Gerardus Mahendra
gerardus.mahendra@pwc.com

Raemon Utama
raemon.utama@pwc.com

www.pwc.com/id

 PwC Indonesia

 @PwC_Indonesia

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,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,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@pwc.com.

DISCLAIMER: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
© 2022 PT Prima Wahana Caraka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,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.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www.pwc.com/structure for further details.

